

제 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거 창 군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3-

제출일자 : 2013. 11
제 출 자 : 거창군수

I 요구이유

- 외식업소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기획생산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다양화하고
- 중소농, 고령농 중심으로 생산된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을 통한 2단계 유통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도모와 소득을 증대하는 등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건립한 거창푸드종합센터를 민간위탁함으로써
- 민간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사용자 조직화, E-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마케팅역량 강화하는 등 Two-Track 유통·마케팅 고도화 전략을 완성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푸드종합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운영 및 그 부대시설 유지·관리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서 위임 또는 권장하는 사업 - 중·소·고령농 생산 농산물 순회수집 - 선별, 소포장, 저온저장, 유통 등 수탁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 거창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사용자 조직화, 전략육성 품목 기획생산 - 거창푸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및 E-비즈니스에 관한 사항 - 꾸러미사업 추진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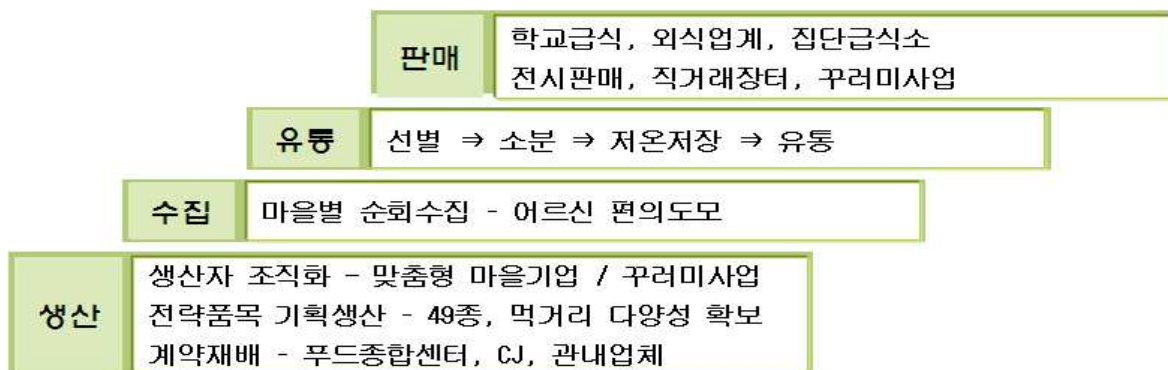
나. 위수탁 시설·장비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소재 거점APC 부지내
- 사업기간 : 2011 ~ 2013. 9 / 1,381백만원 (도 570, 군 811)
- 시설현황 : 지상 2층, 712.5㎡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저장	선별장	화장실	
712.5㎡	180㎡ 판매대, 쇼케이스	107.8㎡ (4실)	162.2㎡ 컨베어, 포장기, 잡곡도정기	82.5㎡	180㎡ 사무실, 기타

- 주요기능
 - 농산물 순회수집, 선별, 소분, 저온저장 유통시설
 -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시설, 소규모 잡곡류 도정시설

다. 운영체계



□ 그간 추진사항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 제정·공포 : 2013.5.22
- 거창푸드종합센터 건립 : 거창IC 인근, 712.5㎡ / 1,381백만원
- 주말직거래장터 시설보완 : 어닝15, 파라솔 3, 파고라 2 / 302백만원
- 거창한 쇼핑몰 구축 : 40여농가 입점 / 50백만원
- U-IT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 및 푸드종합센터 운영 S/W / 490백만원

□ 양우 운영계획

- 매출목표 : 1차년도(5억원)⇒ 2차년도 (10억원)⇒ 3차년도(15억원)
⇒ 3차년도를 기점으로 경영 정상화 예상
- 위탁계획 : 생산자, 소비자, 마케팅 조직을 아우르는 비영리법인
- 분야별 세부계획

분 야	주 요 임 무	비 고
홍 보 · 교 육	- 거창푸드 산업 육성 연간교육계획 수립·시행 - 마을단위 로컬푸드 순회교육 및 참여분위기 조성 - 대·내외 거창푸드 차별성 홍보	
생 산 자 조 직 화	- 전략품목 군별 생산자 조직화 - 생산기술 표준화 및 품목별 표준 매뉴얼 개발 - 사용자 맞춤형 생산프로그램 개발·접목	
품 질 관 리	- 생산농산물 품질관리 기법 개발 - 생산과정 병해충 및 농약관리 지도	
사 용 자 조 직 화	- 업종별 거창푸드 사용 예측 프로그램 개발 - 거창푸드 사용자 모집 및 확대 - 거창푸드 음식 특화 및 관광자원화	
마 케 팅 전 략	- e-비즈니스를 통한 거창푸드 우수성 홍보 - 쇼핑몰 운영, 대내외 마케팅활동 전개	
꾸 러 미 사 업	- 꾸러미사업 참여 농가 조직화 - 꾸러미사업 소비자 조직화 및 운영	

Ⅲ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기본계획

□ 위 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법인 선정

- 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고려사용자, 마케팅 조직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구성 할 것
- 범 국민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교육 능력을 갖출 것

- 마을별 순회수집, 전시 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 꾸러미사업,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갖출 것
- 거창푸드 2단계 유통을 위한 사용자 조직을 갖출 것

□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심의 평가표에 의거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 선정
- 위탁협약 : 2013년중 예정

나. 수지분석 및 정상화 지원

□ 수지분석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목표	500백만원	1,000백만원	1,500백만원
예상수익	$500 \times 16\% \times 70\% = 56$	$1,000 \times 16\% \times 75\% = 120$	$1,500 \times 16\% \times 80\% = 192$
소요예산	157백만원	187백만원	217백만원
수 지	- 101백만원	- 67백만원	- 25백만원

□ 정상화 지원

- 1년차 : 150백만원 (운영자금 50백만원, 예상결손 100백만원)
- 2~3년차 : 100백만원 (예상결손)

다. 장·단점 비교

① 직영, 지방공기업법 검토

[직 영]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영가능 여부
 - 수탁판매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 직영불가
 - 단순 물품대금을 징수·보관하여 지급할 경우
 -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외식업체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필요
 - └ 대금회수 지체 시 : 제때 대금이 지급 되지 않아 민원발생
 - └ 대금 체불 시 : 별도 대금으로 조치, 장기 미불 시 대책 없음
- 검토의견 : 회계 및 의사결정 경직성 등으로 직영 곤란

[지방공기업]

- 공기업의 종류 : 직영기업 (공사·공단), 출자법인 (주식회사, 재단)
- 검토의견
 - 학교급식, 거점APC,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아우를 경우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거창푸드종합센터 단독으로 적용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②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원주푸드종합센터] - 부지 10,036㎡, 건축 3,600㎡, 6,000백만원
⇒ 2013년 4월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기로 최종 결정
- [완주푸드 6차산업화] - 4,000백만원 (국 50%, 군 50%) / 1,870㎡
- 직매장 건립, 가공센터 등 ⇒ 농업회사법인 (주)완주푸드

③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주체별 검토

- 직 영 : 수익발생, 신속한 의사결정 지장초래 등으로 곤란
- 공사·공단·직영기업 : 타당성 확보 및 협의상 어려움 예상
- 농협연합사업단 : 소량·다품목 유통을 위한 본래 취치와 배치
⇒ 생산자인 농민, 사용자인 외식업체, 직거래 및 주말직거래장터, 쇼핑몰관련 농업인 등을 아우르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63호]
 - 민간위탁 기준 제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 인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 선정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9조 (위탁운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근거 제시

마. 기타 직영과 연계된 검토

□ 외계관련사항 검토

- 일반회계 :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15조)
- 세입세출외현금
 - 회계관직 : 별도 회계관직 설치 가능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2항)
 - 종 류 :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 회계처리 :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모두 e-호조를 통해 처리

□ 세입세출외 종류에 책임성 검토

- 보 증 금 : 해당되지 않음
- 보 관 금
 - “원물대금 +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 “1 : 불특정 다수인”으로 거래해야 하는 등 특성상 보관금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잡종금 등 필요한 경비 : 잡종금이나 경비로 보기 어려움

□ 세입세출외연금으로 운영가능 여부

- ① 수탁판매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 직영불가
- ② 단순 물품대금을 징수·보관하여 지급할 경우
 -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외식업체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필요
 - └ 대금회수 지체 시 : 제때 대금이 지급 되지 않아 민원발생
 - └ 대금 체불 시 : 별도 대금으로 조치, 장기 미불 시 대책 없음

□ 검토의견

- 회계의 경직성, 의사결정의 단계성 등으로 직영은 사실상 곤란
- 생산자인 농민, 사용자인 외식업체, 직거래 및 주말직거래장터, 쇼핑몰관련 농업인 등을 아우르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 관계법령 요약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63호]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장 :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집하·선별·저장 :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 ②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받

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위·탁 기간, 유통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